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하수도 변경·폐지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3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인하수도 변경·폐지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6
1. 하수처리장 예산 현황	6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0일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의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 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인하수도 변경·폐지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u>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u>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 ----- <u>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제2항의 규정에</u>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u>제1항 및 제2항에</u>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건물·시설 등의 설치 또는 소유자가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로 구분됨.¹⁾

[하수도의 구분 (법 제2조)]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는 제외)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는 ‘개인하수처리시설²⁾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지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시에도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후하수도의 신속한 정비와 이를 통한 안전한 물환경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시 국고 부담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도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세부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하수관로 중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관로 비중은 45.2%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비율도 29.9%이며, 공공 노후 하수관로 중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비중이 3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⁴⁾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축시 재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하수도의 경우 노후도에 대한 통계 부재로 수치 확인이 불가능함.

정지원 근거가 있는 공공하수도의 경우도⁵⁾ 국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⁶⁾에서 개인하수도 설치, 변경, 폐지까지 국고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하수도의 경우 시설용량이 작고 유기물 위주로 처리하나 공공하수도는 시설용량이 크고 고도처리를 거치므로 개인하수도 대비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 효과가 더 크므로,⁷⁾ 하수 적정처리 및 수질 관리 측면에서 공공하수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1

5)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 도시침수 등 재난 대응, 노후처리장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 중이나 국가재정여건상 지방자치단체 요구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지자체 요구액) 2025년 기준 5.25조원, (최종 국회확정 예산) 3.01조원 (57.3%반영)

자세한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하수처리장 예산 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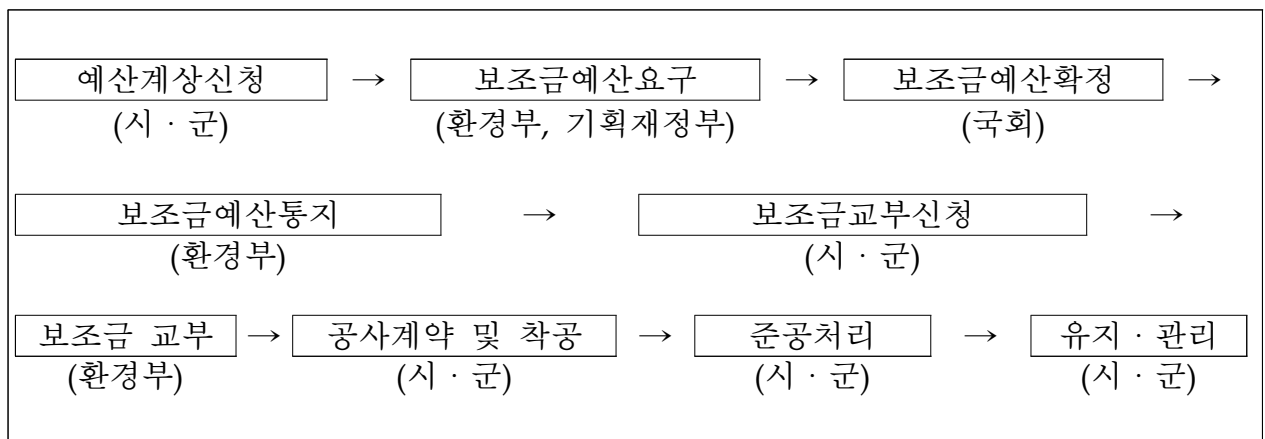
7)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평균 처리용량은 4.5m³/일로 공공하수처리시설(평균 6,086m³/일)의 0.07% 수준이나, 설치 등 공사비 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높아 비용 대비 사업 효과가 낮다는 입장임. (* 시설규모별 공사비 단가: [10m³/일] 48.5백만원/m³, [5,000m³/일] 5.7백만원/m³)

※ 참고자료 : 하수처리장 예산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확충 지원
- (사업기간) 1992 ~ 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율: 광역시 30%, 시군 60%)
- (시행주체) 지자체
- (지원근거) 하수도법 제3조, 제63조

□ 사업 시행 체계



□ 하수처리장 예산 추이(10년간)

《 하수처리장(개량사업 포함) 예산 추이 》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금액 (억원)	3,366	2,487	3,362	2,467	2,174	2,058	2,137	3,507	3,834	3,006
사업수	141	168	181	201	172	187	210	220	212	18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